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기술자문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3. 6. 27.

사회건설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2023년 5월 26일

나. 발 의 자: 이예찬 의원

다. 회부일자: 2023년 6월 8일

라. 상정일자: 제245회 영등포구의회 2023년도 제1차 정례회
사회건설위원회 제5차 회의(2023. 6. 20.) 상정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안전교통경국장 유광순)

가. 제안이유

- 영등포구 기술자문위원회의 기능과 구성을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도시시설의 안전심의 기능을 강화하고, 회의록의 작성 관리 의무와 공개 의무를 명시해 위원회 심의 과정에 대한 시민들의 정보 접근성을 증진 및 자문위원의 제척·회피 사유를 명시해 공정한 기술심의를 통한 도시시설의 안전을 강화하는 데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위원회 기능 개정(안 제2조)
- 위원회 구성 개정(안 제3조)
- 위원회 직무 개정(안 제4조제3항)

- 회의개최 및 결과보고 개정(안 제8조제3항)
-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신설(안 제11조)
-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맞춤법 정비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전문위원: 김경진)

○ 본 개정조례안은

- 영등포구 기술자문위원회의 기능과 구성을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도시시설의 안전심의 기능을 강화하고, 회의록의 작성 관리 의무와 공개 의무를 명시해 위원회 심의 과정에 대하여 구민들의 정보 접근성을 증진시키고 자문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사유를 명시해 공정한 기술심의를 통한 도시시설의 안전을 강화하는 데 근거를 마련하고자 발의된 안건으로

○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1조에서는 기술자문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 법령을 명시하였고,
- 안 제2조에서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9조에 근거하여 기술자문위원회의 기능을 추가하였으며,
- 안 제3조에서는 위원회의 성격과 목적에 부합하도록 위원의 자격을 일부 정비하였고,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위해 위원회를 비상설화 하도록 개정하였으며,
- 안 제8조에서는 회의록의 작성·관리 및 공개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 안 제11조에서는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였고,
- 안 제12조에서는 원활하고 투명한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위원의 해촉 사항을 신설하였음.

○ 검토 결과

- 본 개정 조례안은 기술자문위원회 회의록의 작성·관리 및 공개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여 구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및 해촉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여 위원회가 투명하고 공정하게 심의·의결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조례 개정의 취지가 타당하며 상위법령의 범위 내에서 적정하게 규정된 것으로 판단됨.

4. 심사결과: 원안 가결

서울특별시영등포구기술자문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예찬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65
----------	-----

발의연월일: 2023. 6. .

발의자: 이예찬 의원

찬성자: 임헌호, 이순우, 차인영
의원(3인)

1. 제안이유

영등포구 기술자문위원회의 기능과 구성을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도시시설의 안전심의 기능을 강화하고, 회의록의 작성 관리 의무와 공개 의무를 명시해 위원회 심의 과정에 대한 구민들의 정보 접근성을 증진하는 데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자문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사유를 명시해 공정한 기술심의를 통한 도시시설의 안전을 강화하는 데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원회 기능 개정(안 제2조)

나. 위원회 구성 개정(안 제3조)

다. 위원회 직무 개정(안 제4조제3항)

라. 회의개최 및 결과보고 개정(안 제8조제3항)

마.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신설(안 제11조)

바.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맞춤법 정비

3. 개정안: “별첨”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나. 예산조치: 필요시 반영

다. 입법예고(2023. 6. 7.~ 6. 11.): 의견 없음

서울특별시영등포구기술자문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영등포구기술자문위원회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서울특별시영등포구기술자문위원회조례”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기술자문위원회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서울특별시영등포구”를 “「건설기술 진흥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구청장”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를 제6호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6호(중전의 제4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4.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4조제6항 본문에 따른 새로운 기술·공법 등의 범위와 한계에 대하여 제기된 이의에 관한 사항
5.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2조에 따른 시설물의 정밀안전진단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제3조제1항 중 “15인이내”를 “15인 이내”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위원장은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이하 “구”라고 한다)의 부구청장”을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주관국장”을 “담당국장”으로,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서울특별시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을 “구청장”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대학교수”를 “기술 분야 전공 대학교수”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관련분야”를 “기술 분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구의원

4. 기술 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자

③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제4조의 제목 “(직무)”를 “(위원장의 직무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7조 중 “기술자문위원”을 “구청장”으로 한다.

제8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관리하여야 하며, 회의록의 열람 신청이 있을 경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공개하여야 한다.

제10조제1항 중 “주관과장”을 “담당과장”으로 한다.

제11조 및 제12조를 각각 제13조 및 제14조로 하고, 제11조 및 제12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 위원이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시행령 제20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2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장기불참,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사임을 원하는 경우
4. 제11조제3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 style="text-align: center;"><u>서울특별시영등포구기술자문위원</u> <u>회조례</u></p>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기간 시설의 복잡 대형화됨에 따라 필요시 적기에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여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u>서울특별시영등포구 기술자문위원회</u>(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위원회의 구성, 기능,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u>구청장</u>의 자문에 응한다.</p> <p>1. ~ 3. (생략)</p> <p><u><신설></u></p>	<p style="text-align: center;"><u>서울특별시 영등포구</u> <u>기술자문위원회 조례</u></p> <p>제1조(목적) ----- ----- ----- ----- 「<u>건설기술 진흥법</u>」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u>서울특별시 영등포구</u> -----.</p> <p>제2조(기능) ----- 각 호 ----- <u>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u>(이하 “<u>구청장</u>”이라 한다)-----.</p> <p>1. ~ 3. (현행과 같음)</p> <p>4. 「<u>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u>」 제74조제6항 본문에 따른 새로운 기술·공법 등의 범위와 한계에 대하여 제기된 <u>이의에 관한 사항</u></p>

<신 설>

4.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자문을 요하는 사항

제3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이하 “구“라고 한다)의 부구청장, 부위원장은 부의 관련 주관국장이 되고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서울특별시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임명 또는 위촉한 자로 한다.

1. 대학교수
2. 관련분야의 전문가
3. 덕망있는 지역유지 또는 구의원
4. 기타 기술적인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신 설>

5.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2조에 따른 시설물의 정밀안전진단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
--

제3조(구성) ① -----
----- 15인 이내-----.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

----- 답
당국장-----
----- 각
호의 어느 하나-----
구청장-----
-----.

1. 기술 분야 전공 대학교수
2. 기술 분야-----
3. 구의원
4. 기술 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자

③ 위원회는 안전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의결 후 자동

제4조(직무) ①·② (생략)

③ 위원 중 공무원은 당연직으로 하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이 가능하며 연임에 대하여는 재위촉하지 아니한다.

④ 위원 중 사고 등으로 인하여 자문위원으로 활동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구청장은 다른 사람을 위촉할 수 있다.

제7조(자문요청) 위원회의 자문을 받고자 하는 자는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기술자문위원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제8조(회의개최 및 결과보고) ①·② (생략)

<신설>

제10조(간사와 서기) ① 위원회의 간사는 부의 관련 주관과장이

해산한다.

제4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② (현행과 같음)

<삭제>

<삭제>

제7조(자문요청) -----

----- 구청장-----
-----.

제8조(회의개최 및 결과보고)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관리하여야 하며, 회의록의 열람 신청이 있을 경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공개하여야 한다.

제10조(간사와 서기) ① -----
----- 담당과장-----

되고 서기는 해당부서의 담당주사가 된다.

② (생략)

<신설>

<신설>

② (현행과 같음)

제11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 위원이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시행령 제20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2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

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의

제11조 · 제12조 (생략)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장기불참,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사임을 원하는 경우
4. 제11조제3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13조 · 제14조 (현행 제11조 및 제12조와 같음)